

중국의 상사조정제도와 그 시사점에 관한 연구

김 중 년*

-
- I. 서 론
 - II. 상사조정제도의 개관
 - III. 중국 상사조정제도에 대한 고찰
 - IV. 중국의 조정제도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
 - V. 결 론
-

주제어 : 상사조정, 중국조정, 중재조정, 조정

I. 서 론

오늘날 국제무역액이 점증하고 교류가 활발해 지면서 국제상사분쟁도 복잡·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모든 분쟁을 획일화된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분쟁액수와 사건의 특성에 알맞은 해결방법을 찾기 위한 노력이 국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미국은 분쟁해결방법의 다양화 즉, 소송 외 분쟁해결방법(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이하 'ADR')을 활성화하는 선두주자로서 세계 각국 분쟁해결기관들에 모델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이하 'UNCITRAL')는 이러한 국제적 추세를 반영하여 모델 조정법(2002)을 발표했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까지 전통적 분쟁해결방법인 소송을 중심으로 국제상사분쟁

*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E-Mail : komitae@hanmail.net

을 해결하고 있으며 상사ADR기관으로 대한상사중재원 하나를 두고 있지만 그마저도 중재서비스를 주로 제공하고 있으며 알선이나 조정의 비율은 극히 낮다. 특히 상사조정은 국제적인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관련법이 존재하지 않으며 3년 전에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조정규칙을 제정한 것을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즉 한국은 조정의 활용에 있어서는 이제 걸음마 단계이다.

조정은 소송이나 중재에 비해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소송은 비용과 시간적 면에서 상거래업자들에게는 비효율적인 분쟁해결방법이고 특히 원고와 피고는 적대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거래관계를 해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중재는 소송보다 시간과 비용이 덜 들고 우호적이긴 하지만 조정은 그보다 더 서비스가 효율적이다. 조정은 짧은 시간과 낮은 비용, 우호적 해결이라는 큰 장점 이외에도 비공개, 조정인의 선정에서부터 결과의 수락에 이르기까지 모두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르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자발적 이행률이 높다는 장점도 있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하여 조정은 단순한 민사사건이나 소액 상사사건의 해결에 더없이 적합한 수단이며 당사자에게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국가도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상술한 바와 같이 한국에서 조정은 아직 걸음마 단계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모색해야 한다. 그러려면 조정 선진국으로부터 성공경험을 벤치마킹하고 주변국의 조정개선노력을 배울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제1 교역대상국인 중국은 조정의 문화권이긴 하지만 현대적 개념의 상사조정은 서방국가들에 뒤쳐져 있다. 그리하여 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본고에서는 중국이 시행하고 있는 조정활성화 노력들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한다.

우리나라에는 상사조정에 관한 선행연구¹⁾가 많지는 않지만 조정의 중요성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본고는 우리나라의 제1무역상대국인 중국의 조정제도를 알아보고 그들의 조정활성화 노력으로부터 시사점을 얻는 것을 중심으로 기술하였으며, 중국과 교역을 하는 우리나라 당사자

1) 김대환, “국제상사조정제도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청구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13; 이주원, “한국조정제도의 발전방향”, 중재연구 제12권, 한국중재학회, 2002; 신군재, “한국에서 ADR 정착화를 위한 상설ADR기관의 활성화 방안”, 중재연구 제16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06; 신군재, “무역분쟁해결을 위한 한·중 조정제도의 비교연구”, 중재연구 제14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04; 서정일, “조정제도의 통합적 운용방안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23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13; 이로리, “우리나라 조정제도의 현황과 과제”, 계간중재 제337호, 대한상사중재원, 2012; 오원석·이경화, “중국의 ‘중재와 조정의 결합’제도와 시사점”, 무역학회지 제38권 제4호, 한국무역학회, 2013; 김지호, “대한상사중재원의 조정규칙 시행에 즈음하여”, 계간중재 제337호, 대한상사중재원, 2012; 이로리, “‘Mediation’과 ‘Conciliation’의 개념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중재연구 제19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09.

들에게 중국에서 조정을 진행하고자 할 때의 방법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우리나라 조정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II. 상사조정의 개관

1. 조정의 개념

조정은 제3자의 개입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 중의 하나로서 제3자의 도움을 받으며 진행하는 협상절차²⁾이며, 조정인이라는 중립적인 제3자가 분쟁당사자들이 상호 수용할 수 있는 해결점에 도달하도록 조력하는 절차³⁾라고 정의할 수 있다.⁴⁾ 이러한 조정은 조정인의 역할을 기준으로 조정인이 사건의 실체를 평가하여 당사자간의 분쟁해결을 도와주는 평가적 조정모델과 분쟁당사자가 스스로 분쟁의 해결책을 도출하도록 당사자간의 협상을 돕는 촉진적 조정모델⁵⁾로 나눌 수 있다.⁶⁾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에서는 조정인이 당사자의 협상을 돕는 촉진적 조정이 일반적이며 중국⁷⁾과 우리나라⁸⁾는 조정인이 조정안을 제시하는 평가적 조정이 일반적이다.⁹⁾

2) Stephen B. goldberg, Frank E.A. Sander, Nancy H. Rogers, *Dispute Resolution, Negotiation, Mediation, and Other Process*, Second Edition, Little, Brown and Company, 1992, p. 103.

3) Sharon C. Leniton, James L. Green, *Elements of Mediation*, Brooks/Cole Publishing Company, 1997, p. 1.

4) 이주원, “한국조정제도의 발전방향”, 중재연구 제12권, 한국중재학회, 2002, pp. 92~93.

5) 이 분류는 또한 협상적 조정(bargaining mediation)과 치유적 조정(therapeutic mediation)으로 나뉘기도 하며 위 분류와 기준은 같다(John S. Murray, Alan Scott Rau, Edward F. Sherman, *Processes of Dispute Resolution : The Role of Lawyer*, The Foundation Press, Inc., 1989, p.263.)

6) 이로리, “‘Mediation’과 ‘Conciliation’의 개념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중재연구 제19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09, p.41.

7) 중국국제상회조정센터 조정규칙(2012) 제20조 제4항: 조정절차 중, 조정인은 당사자들에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할 수 있다.

8) 대한상사중재원 조정규칙(2012) 제6조 제3항: 제조정인은 언제든지 구두 또는 서면으로 당사자들에게 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다.

9) 이로리, 전게논문, pp. 33~41.

2. 조정의 유형

조정은 크게 사법형 조정, 행정형 조정¹⁰⁾, 형사조정, 사적조정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¹¹⁾ 본고의 연구범위인 국제상사분쟁은 이 가운데 주로 사법형 조정을 이용하게 된다. 당사자는 법원에 직접 조정신청을 하거나¹²⁾ 소송을 진행하는 수소법원의 판단에 따라 사건이 조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조정을 진행하게 되며, 그 외 소장이 법원에 접수된 후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법원에서 권고하는 조기조정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다. 국제상사분쟁은 관련법에 따라 행정기관 산하 조정위원회에서 행정형 조정으로 해결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기관들은 일반적으로 국내상사분쟁을 다룬다.¹³⁾

대한상사중재원은 그동안 상사계약관련 중재와 알선업무, 그리고 대외무역법에서 규정하는 물품의 수출입관련 분쟁의 조정을 위탁받아 진행하다가 2012년 2월 정식으로 조정규칙을 제정하고 사법분쟁사건을 접수하고 있다.¹⁴⁾ 대한상사중재원은 민간기관이므로 이 조정은 사적조정에 해당한다.¹⁵⁾

3. 조정안의 효력

상술한 바와 같이 국제상사분쟁의 조정은 주로 법원과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진행하게 된다. 법원에서 조정을 진행할 경우 조정안의 제시기관은 판사나 법원조정센터, 외부조정기관 중의 하나일 것이며 어떠한 경우의 조정안이든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것으로 인정되어¹⁶⁾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된다.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조정을 진행할 경우 그 조정안은 민간기관이 작성한 사적 조정안에 해당하므로 위의 법원조정만큼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당사자가 중재원에 중재신청을 한 후 중재절차 개시 전에 사전조정을 받아 조정합의에 도달한 경우, 조정인이 작성한 조정안은 중재인의 중재판정으로 처리되어 위의 법원조정

10) 행정형 조정은 법령상의 근거에 의하여 행정기관과 그 산하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설치된 분쟁 해결기구에서 사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행하는 재판외 분쟁해결제도이다(서정일, “조정제도의 통합적 운용방안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23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13, p. 45).

11) 이로리, “우리나라 조정제도의 현황과 과제”, 계간중재, 대한상사중재원, 2012, pp. 17~24.

12) 민사조정법 제2조: 민사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는 법원에 조정(調停)을 신청할 수 있다.

13) 우리나라의 상사관련 행정조정기관은 김대환, “국제상사조정제도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2013, pp. 45~47를 참고하라.

14) 대한상사중재원 홈페이지, 2015.04.23. 방문.

15) 하지만 대한상사중재원과 같은 여러 민간기관들이 국가의 지원 또는 감독 하에 설립 및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이 조정을 사적조정으로 구분하는 것이 맞는지의 의문이다(이로리, 전게논문, 2012, p. 24).

16) 민사조정법 제29조,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과 마찬가지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그러나 당사자가 직접 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여 처음부터 조정절차를 개시하여 도달한 조정합의의 효력은 단순 민법상 화해계약의 효력만을 가질 뿐이다. 민법상 화해계약은 계약당사자가 합의한 대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분쟁이 재발되어 다른 구제수단을 별도로 취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¹⁷⁾

4. 국제사회에서 조정의 입지

분쟁해결방법으로서의 소송은 절차가 엄격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며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상거래 당사자들한테 이러한 단점은 치명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국제상사분쟁은 소송보다 소송 외 분쟁해결수단인 ADR¹⁸⁾을 선호하고 그 중에서도 국제상사중재는 이미 보편화 되어 있다. 하지만 중재 역시 기타 ADR¹⁹⁾에 비해 시간적 비용적으로 비효율적이고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린다는 점에서 소송과 마찬가지로 강압적이기 때문에 우호적이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다.²⁰⁾

국제상사분쟁의 발생 시, 소송이나 중재의 단점을 커버하기 위하여 조정에 의해 해결하려는 국제적인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²¹⁾ 유럽연합은 2008년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의 민사·상사조정에 관한 지침(Directive 2008/52/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of 21 May 2008 on certain aspects of mediation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²²⁾을 발표하였고, 미국은 1997년 조정에 관한 통일법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통일조정법(Uniform Mediation Act)」²³⁾을 제정하였으며

17) 이로리, 전계논문, 2012, p. 21.

18) ADR은 학자와 국가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고 있으며 주로 Avoiding Disastrous Results, Appropriate Dispute Resolution, Amicable Dispute Resolution 등으로 쓰이고 있다(상세히는 김대환, 전계논문, p. 24 각주 참조).

19) ADR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으나 대체로 알선, 협상, 조정, 중재로 구분하고 있다.

20) 중재는 분쟁당사자가 합의하여 중재인을 선임하고 중재규칙을 선택하므로 자발적 분쟁해결방법이라는 측면에서 ADR에 포함되었는데, 최근에는 중재가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정을 당사자들에게 부과한다는 측면에서 ADR에서 제외(D'Arcy, Leo&Murray, Carole&Cleave, Barbara, *Schmitthoff's Export Trade: The Law and Practice of International Trade*, 10th edition, London Sweet&Maxwell, 2000, pp. 472)시키는 주장들도 존재한다.

21) 조정의 장점으로는 절차의 불요식성에 의한 신속한 해결, 저렴한 비용, 우호적 해결, 자발적 이행 등을 들 수 있다.

22) 동 지침의 목적은 국경간 분쟁해결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조정의 이용을 장려하고 조정 및 사법절차간의 건전한 관계를 보장함으로써 분쟁의 우호적인 해결을 촉진하는 것이다(상세히는 김대환, 전계논문, p. 65와 이로리, “ADR을 통한 EU의 국경간 분쟁해결제도: EU 민·상사 중재지침을 중심으로”, 통상법률 제38권, 법무처, 2009, pp. 184~185 참조).

2001년에 발효시켰다. UNCITRAL은 미국의 통일조정법을 참고하여 「UNCITRAL 모델조정법(2002)」을 제정하였으며 이는 세계 여러 나라들의 조정에 대한 요구를 수용하고 조정제도를 촉진 및 인식을 새롭게 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²⁴⁾

EU와 미국 외에 다른 나라들은 아직 통일 조정법을 마련하지 않았으며²⁵⁾ 법원 조정, 행정조정 등 각국의 기준에 따라 개별법 또는 특별법의 형태로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각 조정의 절차, 효력 등이 통일되지 않아 소송이나 중재처럼 광범위하게 사용되는데 한계가 있다. 예컨대 한국에는 법원조정에 관한 민사조정법과 행정조정에 관한 각 특별법이 있으며, 중국에는 노동조정중재법, 인민조정법 등 개별 조정법들이 있다.

III. 중국 상사조정제도에 대한 고찰²⁶⁾

1. 중국에서 조정안의 효력

중국의 상사조정은 인민조정²⁷⁾, 행정조정, 상설조정센터의 조정²⁸⁾, 법원조정²⁹⁾,

-
- 23) 동 법은 조정인의 의무를 확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분쟁당사자들, 참관자, 조정인이 조정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상세한 규칙들을 규정하고 있다(Kovach, *Mediation in a Nutshell*, 2nd Edition, West, a Thomson Business, 2010, p. 360).
- 24) 김광수, “UNCITRAL 모델 국제상사조정법 제정에 관한 입법동향”, 계간중재, 대한상사중재원, 2002, p. 34.
- 25) 인도도 조정관련 통일법으로 「인도 중재·조정법(1996)」을 두고 있지만 동 법에 근거하면 조정결과는 중재결과와 마찬가지로 중국적 구속력을 가지기 때문에 ADR로서의 조정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상세히는 이경화, “중국의 중재조정(Arb-Med) 제도와 그 시사점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청구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13, p. 28 참고).
- 26) 이 부분은 이경화, 전제논문, pp. 17~24를 주로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 27) 인민조정은 중국에서 1920년대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독특한 분쟁해결 방식으로서 촌민위원회 하부조직인 인민조정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민간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이다(《인민조정위원회조직에 관한 조례》). 2010년 기준 전국적으로 82만 4천여 개의 인민조정위원회가 설립되었고 매년 4백만 건에서 7백만 건이 넘는 조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성공률은 96%에 달한다(장송청, “중국의 인민조정방식 개관”, 성균관법학 제23권 제3호, 성균관대학교법학연구원, 2011, p.143). 또한 조정결과의 90% 이상이 자발적으로 이행되며(Yang Na, “Renmin Tiaojie Zhidu de Xianzhuang Fenxi, Analysis on the Present Situation of the People’s Conciliation System”, *Legal Daily*, 2000, p. 2.) 2011년 1월에는 《인민조정법》을 제정 및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 28) 중국국제상업회의소 조정센터는 CIETAC과 더불어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China Council for the Promotion of International Trade; 이하 ‘CCPIT’)의 산하 부설기관으로 1987년에 설립

중재조정³⁰⁾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국제상사분쟁의 경우 이 중 상설조정센터의 조정이나 법원조정, 중재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일반 조정센터에서 받은 조정안은 민사계약의 성격을 띠며³¹⁾ 당사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분쟁해결절차를 거쳐 집행력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결과를 가져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그러나 양당사자가 이를 인민법원에 제출하여 사법확인을 받게 되면 집행력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³²⁾ 또한 중재기관에 제출하여 중재판정문을 받을 수도 있다.³³⁾ 사법확인이란 인민조정기관이나 상사조정기관, 행정조정기관 등 조정기관의 조정으로 작성된 민사계약의 성격을 가진 조정안에 당사자가 서명한 후 관할법원에 조정안의 법적효력을 인정해 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는 방식을 말한다. 일반 조정기관인 중국국제상회 조정센터의 조정과 민간중재기관에서 진행되는 조정이 이에 해당한다.

법원조정과 중재조정은 강제집행력이 있다. 법원조정을 통하여 작성된 조정안은 법원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³⁴⁾ 중재절차 중에 조정을 진행하여 작성한 조정안은 중재판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³⁵⁾

즉, 상사분쟁을 중국에서 해결할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조정을 받아

되었으며 현재 전국에 총 42개의 분회를 두고 있다. 이 조정센터의 조정성공율은 80%이상에 달한다(Wang Wenying, "The Role of Conciliation in Resolving Disputes: A P.R.C. Perspective", *Ohio State Journal On Dispute Resolution*, Vol. 20:2 2005, p. 427).

- 29) 법원조정은 인민법원의 주재 하에 소송절차 중에 조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식으로 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할 경우에 조정을 우선 진행하고 조정에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에 즉시 판결한다.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 법원은 조정안을 작성하고 양당사자가 서명하는데 이 조정안은 법원판결과 동등한 법적효력을 가지며 이에 대하여 상소할 수 없다 (《중국 민사소송법》 제9조, 제89조).
- 30) CIETAC 중재규칙 제40조 제2항: 당사자들의 조정의사가 있거나 일방당사자가 조정신청을 하고 중재판정부에서 상대방 당사자의 동의를 구했을 경우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 중에 본안에 대하여 조정을 진행한다(중재조정에 대하여 상세히는 이경화, 전개논문들 참고 바람).
- 31) 《소송과 소송 외 분쟁해결방식의 결합제도에 관한 의견》 제8조 제2항: 행정기관이 민사분쟁에 대하여 조정을 진행하여 작성된 조정안은 양당사자가 수락하면 민사계약의 성격을 띤다.
- 32) 중국국제상업회의소 조정규칙 第26條: 조정안이 작성되면 당사자들은 함께 관할 인민법원에서 사법확인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조정안은 강제집행력을 갖는다.
- 33) CIETAC 중재규칙 제45조 제10항: 중재절차 개시 전 당사자들이 협상이나 조정을 통하여 화해한 경우에도 당사자들은 그들의 합의에 따라 중재위원회에서 판정해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다; 2012년 중국국제상회 조정센터의 조정규칙: 당사자들은 조정합의 내용 중에 어느 일방이든 조정안을 중재기관에 제출하여 중재판정문을 발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삽입할 수 있다.
- 34) 《民事訴訟法》 제97조: 조정안은 당사자들이 수락하면 법적효력을 갖는다.
- 35) 《仲裁法》 제51조: 조정을 통하여 합의가 성립된 경우, 중재판정부는 조정안을 작성하거나 합의결과에 따라 판정문을 작성하여야 한다. 조정안과 중재판정문은 동일한 법률적 효력이 있다.

강제집행력이 있는 조정안을 받을 수 있고,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하게 되면 중재 절차 중에 조정을 받아 해결하고 판정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정안을 받을 수 있으며, 상설조정센터나 중재기관에 소속된 조정센터에 조정신청을 하면 민사계약의 성격을 띠는 조정안을 받는데 만약 이러한 조정안에 집행력을 부여하고자 하면 당사자들은 합의하에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사법확인을 받거나 중재기관에 제출하여 판정문으로 받으면 된다.

2. 중국에서 조정의 이용현황

중국은 조정을 아주 중요시 하며 당사자들이 중재나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조정을 우선 고려하도록 법에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³⁶⁾ 그러나 인민법원은 직접 조정신청을 받지 않고 오직 소송이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재판 중에 조정을 진행한다.³⁷⁾ 통계에 따르면 법원은 접수건수의 1/4에서 1/3에 대하여 조정을 진행하며 성공비율이 높다.³⁸⁾

국제상사분쟁은 또한 상사중재기관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근래에 많은 중재기관들에서는 조정규칙을 제정하여 조정을 접수하고 있다. 국제상사분쟁은 보통 조정보다 중재로 해결하기를 선호하며 상거래계약서에 중재조항을 두어 분쟁발생시 중재기관에 회부한다. 중국 중재기관들은 접수된 중재사건에 대하여 중재절차 진행 중에 조정으로 해결하고 있는데 그 비율은 각 중재기관마다 다르게 나타난다.³⁹⁾

국제상사분쟁은 또한 일반 조정기관인 중국국제상업회의소(China Chamber of International Commerce)나 중재기관 소속 조정센터에서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다. 중국국제상회 조정센터는 전국에 42개 분회를 두고 있으며 매년 평균 400건 이상의 조정접수를 받고 80%이상의 성공률을 보이고 있다.⁴⁰⁾

36) 《중국계약법》 제128조는 분쟁해결방법으로 조정을 우선 진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Linda C. Rief, "The Use of Conciliation or Mediation for the Resolution of International Commercial Disputes", *Canadian Business Law Journal*, Vol. 45, p. 29).

37) 民事訴訟法 第九條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의 심리 시 반드시 당사자자치와 합법적 원칙에 근거하여 조정을 진행해야 한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즉시 판결한다.

38) 唐厚志, "調解在中國昌盛發展", 中國國際商會調解中心, 2011.

39) CIETAC은 접수건수의 약 1/3을 이런 "중재조정" 방식으로 해결한다고 하는데, 이 수치는 연구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40) 唐厚志, "調解在中國昌盛發展", 中國國際商會調解中心, 2011.

3. 중국의 조정활성화 노력

1) 조정활성화 사회분위기 조성

중국은 2004년 “조화로운 사회의 건설”을 슬로건으로 내걸고⁴¹⁾ 분쟁해결에 있어서는 “대조정(大調解)”을 강조하면서 분쟁해결방법으로 조정을 적극 추진할 것을 지시하였다. “대조정”이란 모든 분쟁해결방식에 조정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방식을 모색하여 가능한 인민조정, 행정조정, 사법조정과 중재조정을 추진 및 연계 시킨다는 개념이다.⁴²⁾ 그 후 2007년에는 《노동조정중재법》을 발표하였고 2010년에는 《인민조정법》을 제정하였으며 현재에는 《행정조정법》의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2011년에는 최고인민법원을 비롯한 몇몇 기관들이 《분쟁해결방식으로써 조정의 활용을 추진할 것에 관한 의견(關於深入推進矛盾糾紛大調解工作的指導意見)》을 발표하고 “중재조정”방식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하였다.⁴³⁾

2) 조정 권장 법규정

1982년 제정된 중국 《민사소송법》에는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할 때 반드시 조정을 우선시해야 하며 조정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즉시 재판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을 정도로 법원조정을 중요시 하였다. 물론 2013년 개정·시행되고 있는 현행 《민사소송법》⁴⁴⁾은 당사자 자치를 강조하여 “당사자들의 자발적 의사가 있을 경우”라는 단서가 있지만 판사들이 우선 조정을 시도하는 옛 방식이 필드에서 이어지고 있다. 또한 2003년 개최한 전국고등법원 원장회의에서 최고인민법원은 “법원조정을 강화하고 법원조정의 비율을 높이는 것”을 인민을 위한 최고의 조치라고 발표하기도 했다.⁴⁵⁾

3) 중재절차 중 조정 진행

중국 중재법 제51조는 “중재판정부는 판정 전에 조정을 할 수 있다. 당사자들이

41) 2004년9월19日, 中國共產黨第十六屆中央委員會第四次全體會議 내용.

42) 陳忠謙, “我國“大調解”格局下的仲裁調解”, 仲裁研究 第28輯, 2012, p. 2.

43) 2010년부터 2012년까지 西安仲裁委員會에서 선정된 우수중재사례를 보면 절반 이상이 중재 절차 중에 조정으로 해결된 사례였는데, 이러한 사례가 선정된 이유는 “대조정”의 정신과 중재기관의 가치관인 “우선조정”의 정신을 실현했고 “중재조정”제도를 활용하여 단순 중재로는 해결이 어려운 사례들을 지혜롭게 해결했다는 것이었다(서안중재위원회 홈페이지).

44) 민사소송법 총칙 제9조,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할 때 당사자들의 자발적 의사와 합법적 원칙아래 조정을 진행해야 하며, 조정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즉시 판결한다.’

45) 劉嶸, “樹立司法爲民思想, 踐行公正与效率主題—記全國高級法院院長座談會”, 人民司法, 2003.

조정절차에 동의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조정을 하여야 한다. 조정이 성립되지 못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즉시 판정을 내려야 한다. 조정을 통하여 합의가 성립된 경우, 중재판정부는 조정조서를 작성하거나 합의 결과에 근거하여 판정문을 작성하여야 한다. 조정조서와 중재판정문은 동일한 법률적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다. 중국 중재실무에서는 40% 이상⁴⁶⁾을 “중재조정”으로 해결하고 있으며 CIETAC은 접수건수의 20%에서 30%를,⁴⁷⁾ 북경중재위원회는 50% 가까이⁴⁸⁾를 “중재조정”으로 해결하고 있다.

4) 일반 조정안에 집행력 부여 기능

《분쟁해결방식으로써 조정의 활용을 추진할 것에 관한 의견(關於深入推進矛盾糾紛大調解工作的指導意見)》은 “인민조정기관, 행정조정기관 또는 기타 조정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들이 작성한 조정조서는 당사자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인민법원에 사법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조정조서를 심사하고 사법확인을 한다”고 규정한다. 사법확인을 받은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효력이 같아진다. CIETAC 중재규칙은 “중재절차 개시 전 당사자들이 협상이나 조정을 통하여 화해한 경우 당사자들은 중재위원회에 그들의 화해합의에 따라 중재판정을 작성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는 중재절차 중에 판정부가 조정을 진행하는 것과는 성격이 전혀 다른 일반 조정조서에 중재기관이 집행력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일반 조정기관인 중국국제상회 조정센터 조정규칙도 “당사자들은 조정합의 중에 ‘어느 일방 당사자든 조정합의를 CIETAC에 제출하여 중재판정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는 중재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즉, 일반 조정기관에서부터 중재기관, 법원에 이르기까지 조정안에 집행력을 부여함으로써 조정의 이용률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을 엿볼 수 있다.

5) 외국기관과의 조정협력

중국의 전문상사조정기관인 중국국제상회 조정센터는 세계 각국의 기관들과 연합조정기구를 설립하거나 협력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당사자들의 조정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 조정의 공정성과 전문성 및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이 기관이 최근까지 체결한 조정협정과 연합조정센터의 현황은 아래 그림과 같다.

46) 陳忠謙, 전제논문, p. 5.

47) 趙菁, 中國國際經濟貿易仲裁委員會仲裁規則釋義及適用指南, 法律出版社, 2005, p. 162.

48) 북경중재위원회 홈페이지, 2015.4.25.방문.

<그림 1> 중국국제상회조정센터 연합조정 관계도



자료: 중국국제상회 조정센터 홈페이지(2015.04.25. 방문)

이 중 한중상사분쟁조정센터는 2001년 7월 중국국제상회 조정센터와 재중한국상공회의소/대한상공회의소가 체결한 협력협정에 따라 설립하였으며, 한중 양국 기업들간에 발생하는 무역, 투자, 금융 등 각종 상사/해사분쟁을 공동의 명의로 연합조정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다.⁴⁹⁾

IV. 중국의 조정제도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

1. 한국에서 상사조정의 이용현황과 문제점

1) 한국의 상사조정 이용현황

한국에는 전문 상사조정기관이 설립되어 있지 않으며 법원조정센터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상사분쟁을 조정으로 해결할 뿐이다. 법원조정은 법관이 개입되거나 지시하는 바에 따라 조정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가 받아들일 경우 법원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일반 상사조정과는 차이가 있다.

49) 穆子礪, “論中國商事調解制度之构建”, 對外經濟貿易大學 博士學位論文, 2006, p. 141.

대한상사중재원은 그동안 국내·국제 상사계약관련 분쟁의 중재와 알선업무를 진행하고⁵⁰⁾ 대외무역법에서 규정하는 물품의 수출입관련 분쟁의 조정을 위탁받아 진행하였으며 단순 조정신청은 접수하지 않았다. 그 후 2012년 자체 조정규칙을 제정하고 당사자 간의 계약 및 기타 법률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분쟁⁵¹⁾의 조정접수를 받기 시작하였으며 이제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다.

2) 한국 상사조정외 문제점

2005년 민사사건 중 소액사건이 77.4%를 차지했다고⁵²⁾ 하는데 이는 미국 법원에 제기된 사건 중 90%가 법원과 연계된 ADR로 해결되는 것⁵³⁾과 대조적이다. ADR이 한국국민들에게 인지도가 낮은 이유는 국가적 차원에서 ADR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고 관련 제도를 마련하지 않았으며 ADR기관이 턱없이 부족하고 전문가 교육을 중요시하지 않기⁵⁴⁾ 때문이다. ADR의 인지도가 낮으니 자연스럽게 중재나 조정외 대한 인지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

조정외 대한 인지도가 낮더라도 사건이 법원이나 중재원에 회부되면 이러한 기관들에서 우선 조정을 권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전술한바와 같이 중국은 수소법원이 우선 조정을 권유하는 분위기이고 중재위원들도 중재절차 개시 전이나 중재절차 진행 중에도 조정을 권장하고 있다. 미국법원도 소액사건의 90%를 ADR을 권장해서 해결한다고 하였다.

또한 ADR중 중재외 관하여는 중재법이 제정되어 있으나 상사조정외 관한 법은 부재하며 대한상사중재원도 2012년에 겨우 조정규칙을 마련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인 구성을 위하여 국내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중재인명부를 구성하고 있으나, 조정외는 중재인처럼 사건실체에 간여하는 것보다 당사자들의 화해를 도출하는 작업을 주로 하기 때문에 관련 스킬이 필수이다. 허나 아직은 이런 조정외법을 전문적으로 가르치거나 훈련시키는 기관이 없고 이러한 기법외 능숙한 조정외인외 부족한 상황이다.

50) 대한상사중재원의 알선은 외부조정외를 선정하지 않고 중재원 내부직원이 알선자가 되어 무료로 진행해주는 형식이기에 공식적 의미의 조정외는 아니다(김지호, “대한상사중재원의 조정규칙 시행에 즈음하여”, *계간중재* 제337권, 대한상사중재원, 2012, p. 37).

51) 대한상사중재원 조정규칙 제2조.

52) 신군재, “한국에서 ADR정착화를 위한 상설ADR 기관의 활성화 방안”, *중재연구* 제16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06, p. 190.

53) 신군재, *상재논문*, p. 199.

54) 대학교 법학과에서도 소송을 중심으로 강의를 하고 ADR을 흘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상사 분쟁을 다루는 상과대학도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2. 중국의 조정활성화 노력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1) 홍보활동 강화

진술한바와 같이 중국은 최고인민법원과 여러 최고 기관들이 연합하여 조정의 활용을 적극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었으며, 국가 차원에서 조화로운 사회의 건설을 목표로 “대조정”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 모든 분쟁해결수단에 조정을 결합하도록 하였다. 중국은 조정의 역사가 오래 되었지만⁵⁵⁾ 전통적 조정방식⁵⁶⁾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에 도달하자 국가적 차원에서 홍보 및 강화작업을 하는 것이다.

국제상사분쟁을 소송이 아닌 ADR로 해결하는 것이 많은 장점을 갖고 있지만 아직도 한국의 상거래업계 종사자들의 ADR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못하다. ADR 중에서 중재는 그 결과가 강제집행력이 있기에 그동안 학계와 실무계를 대상으로 중재를 추천해 왔는데, 사실 중재보다 조정이 비용과 시간면에서나 우호적인 면에서 더 우수하다는 것은 확실하다. 하지만 아직까지 한국에는 조정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노력이 많지 않다. 이에 중국의 홍보활동을 참고하여 한국도 국가적 차원에서 분쟁의 효율적, 우호적 해결방식인 조정을 적극 활용하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대한상사중재원은 2012년에 조정규칙을 제정하고 조정신청을 받고 있지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이며, 조정의 집행력부재와 전문성에 대한 의문 때문에 이용을 꺼리는 상거래업자들에게 조정의 장점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2) 전문 상사조정기관의 설립

한국에도 전문 상사조정기관을 설립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상거래업자들의 조정에 대한 수요를 높이기 위한 홍보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대학교, 상공회의소, 무역협회, 중재관련 학회, 무역관련 학회, 법률관련 학회 등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가 접수되거나 법원에 소송이 접수될 경우 이런 기관들은 당사자들에게 우선 조정을 받아 볼 것을 권유할 필요가 있다.

조정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 대한상사중재원은 중국국제상회와 같이 세계 여

55) 중국인들은 고대로부터 “화평”, “화합”, “조화”를 중요시 해왔고 기원전으로부터 지금까지 조화로운 분쟁해결방식인 조정을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현대의 ADR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전통적 조정이다.

56) 인민조정은 중국에서 1920년대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독특한 분쟁해결 방식으로서 촌민위원회 하부조직인 인민조정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민간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이다.

러 분쟁해결 기관과 협력하여 조정을 진행하도록 하는 노력을 할 수 있겠으며, 나아가 전문 조정기관을 별도로 설립하거나 대한상사중재원의 명칭을 종합ADR기관의 이미지를 갖도록 바꾸어 중재 이외의 방식의 비율을 적극적으로 늘릴 수 있을 것이다.

3) 외부기관과 협력

중국국제상회 조정센터는 세계 각국의 조정기관이나 분쟁해결기관과 협력관계를 맺거나 함께 연합조정기관을 설립하여 양국간의 상사분쟁을 조정으로 해결하고 있다. 한국은 전문 상사조정기관이 없을뿐더러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조정을 시작한지도 오래 되지 않아 아직 경험이 부족하고 외부기관과의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외국조정기관과 협력관계를 맺으면 상거래업자들의 조정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게 될 것이고 두 나라 조정인이 협력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때문에 언어의 장벽이나 문화적 장벽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4) 집행력 부여

중국에서 일반 조정기관이 작성한 조정조서는 민사계약의 효력이 있으며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하지만 당사자들이 이 조정조서에 강제집행력을 부여하고자 할 경우 법원에 사법확인을 신청하거나 중재기관에 중재판정문의 작성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과 중재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중재규칙이나 조정규칙을 통해서도 당사자들에 고지하고 있다.

한국에서의 일반 조정조서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민사계약의 효력이 있으며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중재신청 후 중재절차 개시전에 조정을 진행한 경우와 중재절차 중에 화해에 이른 경우 그 결과는 중재판정으로 작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조정은 일반 조정기관에서 작성한 조정조서와는 성격이 다르다. 일반 조정조서에 집행력을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 민사소송법이나 중재법상에 없으므로, 조정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집행력 부여에 대해서도 당사자들의 합의가 있는 경우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5) 중재절차 중의 조정

중국은 중재절차 중에 당사자의 조정요청이 있거나 당사자가 판정부의 조정제의를 수락할 경우 중재판정부가 중재절차를 중단하고 조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

는 제도를 중재법에서 명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중재절차의 공정성을 해친다는 이유로 국제사회에서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이론보다 실무에서 직접 적용해온 경험을 통하여 그 효율성을 입증하고 있다.

한국도 대부분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중재절차 중에 중재판정부가 직접 조정인이 되어 조정을 진행할 수 있는 제도를 수용하지 않는 입장이다. 논자는 중재조정이 갖고 있는 이론적인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조정의 이용률을 높이고 우호적 해결이 가져다주는 자발적 이행의 장점도 누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만약 중재인이 직접 조정을 진행하는 것의 문제점을 간과할 수 없다면 다른 제3의 조정인을 추가하더라도 조정을 활성화하는 것이 당사자들에게도 유리하고 사회적 비용도 줄일 것이다.

6) 전문조정인 양성

소송은 법관이 진행하고 중재는 관련 전문가가 진행하게 되므로 이 두 방식은 당사자가 전문가의 도움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므로 그 전문성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고 하겠다. 하지만 조정인의 전문성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의문을 표시하는 것은 아직 조정인의 자격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재기관 소속 조정센터에서 조정을 진행할 경우 조정인은 중재인명부에서 선정되거나, 대한상사중재원의 앞선처럼 비전문가인 일반 직원이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중국의 선진사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오스트레일리아의 활동을 보기로 하겠다.⁵⁷⁾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90년대 초부터 조정인의 자격인증계획을 갖고 있다가 2007년 9월 정식으로 「오스트레일리아 조정인 기준」과 「오스트레일리아 조정인 행위기준」을 발표하고 법원조정인, 행정조정인, 일반조정인 모두가 이 기준에 따라 선정 및 활동하도록 하고 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2012년부터 조정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자체 기준에 따라 구성된 조정인명부를 두고 있다. 조정은 소송이나 중재와는 다른 절차 규칙이나 윤리규칙 등이 요구되므로 조정인은 해당 사건 관련 전문가여야 할 뿐만 아니라 조정의 진행기법에 대해서도 충분히 숙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소송이나 중재는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강제집행력이 있는 결과를 제공하여야 하므로 전문성이 중요시 된다면, 조정은 전문성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의 화해를 성사시키는 기법에 능통한지가 조정의 성공여부를 결정한다.

57) 侯金劍, "論中國商事調節-以商會商事調節爲中心", 中國政法大學 碩士學位論文, 2011, pp. 23~24.

한국은 오스트레일리아의 조정인 기준을 참고하여 관련 기준을 제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렇게 구성된 조정인명부에 대한 상거래업자들의 신뢰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

V. 결 론

중국은 문화적으로 “조화로움”을 미덕으로 여겨 분쟁을 소송보다는 조정으로 해결해왔다. 그것이 요즘의 인민조정으로 발전하여 국내 민사사건은 주로 인민조정으로 해결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상사사건은 소송이나 중재를 이용하여 왔으며 현대적 개념의 ADR인 조정은 중국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국가들에서 더 활성화되고 있다. 중국이 조정을 오랫동안 사용한 것이 문화적 배경에 있다면 서방국가들이 현대적 상사조정을 활성화한데는 무역거래의 복잡화와 분쟁의 다양화 및 효율적 해결방식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이다.

중국도 상사조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2004년 국가의 슬로건을 “조화로운 사회의 건설”로 정하고 분쟁해결수단도 조화를 강조한 조정을 많이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즉, 소송이나 중재를 진행할 때에도 조정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조정관련 개별법들도 속속 발표했다. 인민법원은 심사시 조정을 우선시하고 중재기관도 중재절차 진행 전 또는 진행 중에 조정을 적극 권장 및 진행하고 있다. 법원이나 중재기관에서 작성한 조정안은 집행력이 보장되는 반면 세계적으로 일반 상사조정기관에서 작성한 조정안은 민사계약의 성격만 있다. 중국은 일반 조정안도 당사자들의 합의가 있으면 법원의 사법확인을 받거나 중재기관의 판정문작성을 거쳐 집행력을 띠도록 법에 명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전문상사조정기관인 중국국제상회 조정센터는 세계 각국의 조정기관들과 협력관계를 맺어 해당 양국간 분쟁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한국은 중국에 비해 ADR기관이 적고 조정의 진행경험이 부족하다. 이러한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경험과 노력방향을 참고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조정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우선 조정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대학교와 무역협회 등 기관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법원과 중재기관은 접수사건을 우선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한다. 또한 부족한 조정기관을 추가 설립하고 대한상사중재원을 종합ADR기관의 성격을 보여줄 수 있는 명칭으로 쓸 필요가 있으며, 법관이나 중재인과는 다른 조정인만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정진

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일반 조정안은 집행력이 없어 조정안 도출 이후에도 일방이 의무이행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처럼 일반조정안도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집행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관련 법률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전문 조정기관이 설립되면 외국의 조정기관들과 협력관계를 맺어 양국간 조정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본고는 상사조정제도에 관한 기존의 선행연구에 비하여 중국의 조정제도를 살펴보고 그들의 조정활성화 노력으로부터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한 것에 차별성이 있으며, 우리나라의 조정이 아직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추후 다른 나라들의 선진경험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참 고 문 헌

- 김광수, “UNCITRAL 모델 국제상사조정법 제정에 관한 입법동향”, 계간중재, 대한상사중재원, 2002.
- 김대환, “국제상사조정제도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청구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13.
- 김지호, “대한상사중재원의 조정규칙 시행에 즈음하여”, 계간중재 337호, 대한상사중재원, 2012.
- 이경화, “중국의 중재조정(Arb-Med) 제도와 그 시사점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청구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13.
- 장송청, “중국의 인민조정방식 개관”, 성균관법학 제23권 제3호, 성균관대학교법학연구소, 2011.
- 서정일, “조정제도의 통합적 운용방안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23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13.
- 신군재, “한국에서 ADR 정착화를 위한 상설ADR기관의 활성화 방안”, 중재연구 제16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06.
- _____, “무역분쟁해결을 위한 한·중 조정제도의 비교연구”, 중재연구 제14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04.
- 오원석·이경화, “중국의 ‘중재와 조정의 결합’제도와 시사점”, 무역학회지 제38권 제4호, 한국무역학회, 2013.
- 이로리, “‘Mediation’과 ‘Conciliation’의 개념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중재연구 제19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09.
- _____, “ADR을 통한 EU의 국경간 분쟁해결제도: EU 민·상사 중재지침을 중심으로”, 통상법률 제38권, 법무처, 2009.
- _____, “우리나라 조정제도의 현황과 과제”, 계간중재 제337호, 대한상사중재원, 2012.
- 이주원, “한국조정제도의 발전방향”, 중재연구 제12권, 한국중재학회, 2002.
- D’Arcy, Leo&Murray, Carole&Cleave, Barbara, *Schmitthoff’s Export Trade: The Law and Practice of International Trade*, 10th edition, London Sweet&Maxwell, 2000.
- John S. Murray, Alan Scott Rau, Edward F. Sherman, *Processes of Dispute Resolution : The Role of Lawyer*, The Foundation Press, Inc., 1989.

- Kovach, *Mediation in a Nutshell*, 2nd Edition, West, a Thomson Business, 2010.
- Linda C. Rief, “The Use of Conciliation or Mediation for the Resolution of International Commercial Disputes”, *Canadian Business Law Journal*, Vol. 45, 2007.
- Stephen B. goldberg, Frank E.A. Sander, Nancy H. Rogers, *Dispute Resolution, Negotiation, Mediation, and Other Process*, Second Edition, Little, Brown and Company, 1992.
- Sharon C. Leniton, James L. Green, *Elements of Mediation*, Brooks/Cole Publishing Company, 1997.
- Wang Wenying, “The Role of Conciliation in Resolving Disputes: A P.R.C. Perspective”, *Ohio State Journal On Dispute Resolution*, Vol. 20:2, 2005.
- Yang Na, “Renmin Tiaojie Zhidu de Xianzhuang Fenxi, Analysis on the Present Situation of the People’s Conciliation System”, *Legal Daily*, 2000.
- 劉崑, “樹立司法爲民思想, 踐行公正与效率主題—記全國高級法院院長座談會”, 人民司法, 2003.
- 趙菁, 中國國際經濟貿易仲裁委員會仲裁規則釋義及适用指南, 法律出版社, 2005.
- 穆子礪, “論中國商事調解制度之构建”, 對外經濟貿易大學 博士學位論文, 2006.
- 唐厚志, “調解在中國昌盛發展”, 中國國際商會調解中心, 2011.
- 侯金劍, “論中國商事調節-以商會商事調節爲中心”, 中國政法大學 碩士學位論文, 2011.
- 陳忠謙, “我國“大調解”格局下的仲裁調解“, 仲裁研究 第28輯, 2012.

ABSTRACT

A Study on the Commercial Mediation System in China and its Implications

Jung – Nyun KIM

This thesis mainly studies the Commercial Mediation System in China and its Implications to Korea. Commercial mediation is an important dispute settlement method, however there are more studies on the issues of arbitration than the ones on mediation. Commercial mediation emerges From the tide of economic activity, needing an earnest research and to be developed.

Business mediation law has been enacted in some nations like USA, but in Korea, there is no law in mediation field to follow. To set up business mediation law is necessary and urgent as well as feasible.

This thesis first introduces the mediation of the general meaning including concept, makes a research concerning the sorts of the mediation, compares the effect of different kinds of mediation, and studies the current status of use of mediation in other countries.

Than introduces current status of use of mediation in China, and examine mediation system in China. Through this studies, the writer no that there is almost equal problem in China comparing to Korea. So than examine how Chinese government make countermeasures to cover their problems, and give Korean government several implications that can learn from China.

Keywords : Commercial Mediation, Mediation in China, Conciliation in China,
Mediation in Korea.